DC01-9412037

시·군 農漁村發展計劃 修正·補完指針

1994. 12

農 林 水 産 部

빈 면

1. 市·郡 農漁村發展計劃의 樹立經緯

◆ 당초 2001년까지의 42兆원 사업이 신농정 추진계획으로 '98까지 3년 앞당겨짐에 따라 '92년에 수립된 시·군 農漁村發展計劃을 3년 앞당겨 調整·시행 ◆

□ 農漁民 自律推進方式 시행 대통령 보고 ('93.9.27)

- o 자율방식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 o 42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 앞당기기 위한 방안
- o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조정방안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調整指針 시달 ('93.11)

- o 투자계획을 3년 앞당긴 도별·연도별('95~'98) 국고 투융자한도 시달
 * 농어민자율·지방추진사업('95~'98: 19조6천억원, '96~'98: 15조7천억원)
- o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說明書 배부

□ 시·군 농어촌발전計劃 調整 ('94.1~4)

- o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신청 접수 ('94.1)
 * 시·군마다 평균 2,000건씩 총 40만건 접수
- o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 조정(시·군마다 1회이상 개최)
- o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321회)

□ 지방 농어촌발전계획, 중앙보고 ('94.5)

- o 9개도, 204개 시·군 제출 (DATA BASE화)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은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農漁村構造改善 42조 투자계획의 下位計劃('92~2001년)으로 '92년 처음 수립

2. 시·군 및 시·도 農漁村發展計劃의 修正·補完 目的

(1) 중앙정부의 中期 投融資計劃 確定에 따른 投融資 對象事業 擴大

o 42조 조기 투융자사업중 신규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 투자계획에 따라 추가된 사업을 시·군 농발계획에 반영

(예) 농특세사업: 재경지정리, 물류센타 등 유통시설 확충, 어촌종합개발, 임도건설 등

42조 신규사업 : 저수지 준설사업, 기계화 경작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2) 농어민의 사업신청을 받아 작성된 農漁村發展計劃에 의거 지방정부의 豫算 요구, 농수산관련 예산의 編成 및 執行體系를 제도화

o 계획과 예산의 요구 및 사업집행의 일관성 유지

→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청탁에서 벗어나 농어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의 集中支援이 가능하게 되고, 농정의 透明性을 제고

※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배제

(3) 농림수산분야 지원사업의 統合指針(농림수산사업 統合實施要領)의 도입에 따라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를 동 지침에 맞게 조정·운용

(예) o 투융자계획과 사업신청 등 계획의 수립 (통합실시요령 제12조~제23조 참고)

o 예산요구, 가내시 등 집행 (동 요령 제24조~제30조 참고)

o 계획의 평가 (동 요령 제34조~제40조 참고)

(4) 농림수산분야 지원사업이 사업유형에 따라 자율사업과 공공계획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동 원칙에 따라 재조정

o 농발계획상 자율(55), 지방(94), 중앙추진사업(98개) 으로 구분된 사업을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자율(70), 공공계획사업(205개) 으로 재분류 : 사업유형 구분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참고

(5) 지난 '94.5월, 중앙에 제출한 바 있는 시·군(시·도) 농어촌발전계획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군계획의 수정·보완시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고, 매년 확정된 豫算이 農漁村發展計劃上의 우선순위에 알맞게 執行되게 함.

o 농어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획에 반영한 일부 42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o 농어가 경영상담 결과에 따라 지역별 농어가육성 지원대책을 수정계획이 반영 (예) 충북 농촌종합개발계획 및 옥천군 농촌개발모델 참고

(6) '94.5월에 제출된 바 있는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잠정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정·보완· 최종 확정

o 지역 농어촌발전의 종합적 기본계획으로 활용
→ 농어민의 현장의견이 반영된 계획성있는 사업집행의 기반구축

(7) 지난 6월 마련된 WTO에 대응한『농어촌발전대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시·군 계획에 반영, 사업화하고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의 조기착수를 용이하게 함

→ 연초부터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년에 비해 2~3개월 빨리 사업착수가 이루어 짐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3. 시·군(시·도) 農漁村發展計劃의 修正·補完 要領

가. 개 요

(1) 基準計劃

o '94.5 조정제출한 시·군(시·도) 農漁村發展計劃을 基本으로 하여 調整

(2) 계획 補完·修正의 重點

o 농특세사업과 42조 신규사업 추가

o '94. 5 조정·제출한 계획을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종합지원방식 반영)

o 사업계획과 예산요구, 집행의 연계체계 확립(사업우선순위 등)

o 농어가의 사업신청과 의견수렴을 체계화

o 농어가 경영상담결과 반영

o 사업의 재분류

o 사업평가제와 연결 운용

(3) 計劃期間

o 기존 시·군 농발계획기간중 '94~'98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은 해당년도를 포함한 3년(당해년 + 후2개년)을 단위로 수정·보완

(예) '96실행계획 수립시 '97~'98계획까지 수정·보완

(4) 主要 檢討事項

- 94.5 조정.제출한 농발계획 검토결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

o 사업계획이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

(예) 과수생산·유통지원의 표준단가 보다 시·군 계획단가가 현저히 낮음 → 표준단가대로 종합지원

o 주변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o 수립된 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능력 여부

(예) 농공단지·특산단지조성 등 지방비 부담사업의 축소 계상
→ 의견이 수렴된 사업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필히 확보

o 특정품목에 과잉중복 투자되어 중앙정부의 투자방침과 일치하는지 여부

(예) 과수·시설채소등 특정품목에 과잉 중복 투자 경향 상존
→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중앙계획과의 연계 검토

o 농어민의 사업신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신청을 했는지 여부

o 사업별로 적격한 농어민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 경영상담결과 활용등 엄격심사

집중투자, 투자효율성제고, 농어민의견 반영,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등 중앙의 정책의지가 일선현장과 일치되도록 보완

나. 修正·補完要領

o 기존 농어촌발전계획서를 원안으로 하여, 농어촌발전계획 및 투융자계획도 함께 보완

o 각도는 붙임자료중 농어촌투융자 도별, 사업분야별 배정한도를 기초로 하여 시·군별 투융자 한도를 시달

- 시·군은 시·도에서 정한 시·군별, 사업별 투융자 한도내에서 계획을 수정·보완

※ 투융자 배정한도 대상사업은 42조 사업과 농특세 사업중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자율사업과 공공계획사업중 지역자체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o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과 세부사업 시행지침 참고

o 투자계획 수립기간은 '98까지로 하되, '94년도는 사업시행 실적금액을, '95년도 계획은 '95예산을 기재하고, '96~'98은 농어민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에 반영

o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등 사업 재분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과 이 지침 붙임자료중 사업분류 대비표를 참고

o 투자계획 우선순위는 42조 투융자계획 및 '94.6. 확정한 농발대책과 농특세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o 농특세사업은 계획서 본문중에 사업분야별로 반영하되, 계획서 부록에도 별도 편집하여 국민성금적 성격의 사업임을 부각

다. 절 차 (통합실시요령 절차준용)

(1) 농어민과 품목별조직 등의 事業計劃 樹立 (의견수렴)

- o 투융자계획, 사업신청요령등을 20일이상 마을단위까지 공고
- o 통합실시요령, 세부사업지침과 투융자한도를 기초로 사업계획 수립

(2) 시·군의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

- o 신청자별로 자격유무, 사업의 타당성, 지방비·자부담능력, 시·군 자체계획, 관련계획 등과의 조화 여부등을 검토
- o 지역여건변화, 사업시행평가 결과등을 참고로 사업별·대상자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3)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o 농발심의회는 중기 농어촌발전계획의 투융자방향과 연차별 투융자 한도 범위내에서 품목별·사업별 신청액을 조정, 농어촌발전계획 마련
- o 세부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조정, 전체회의에는 농어민의 참여를 허용

(4) 도의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승인

- o 도에서는 도의 추진방향 사업물량과의 연계 및 시·군별 특성 반영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승인

(5)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의 공고

- o 시·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후 (지시조건이 있는 경우는 검토보완후) 주민들에게 계획 내용을 공고

4. 매년도 豫算執行 및 申請과 連結運用

(1) '95豫算執行

o '95년도 사업계획은 기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도별로 배분된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지난해 계획 수립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대상자 중에서 예산요구시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순수 융자사업은 '94.12월까지 도별 배정 계획(통합실시요령에 포함)

* '95년도 예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94.10.15일 기 가내시 통지

(2) '96豫算申請

o '96년예산은 농어민과 품목별 조직등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지역별 투융자 한도 범위내에서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에 예산신청

* 도별 국고투융자 배정내역(농특세포함)은 별첨 참고

- 사업신청서를 받은 시·군은 투융자계획, 세부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시·군 계획, 농촌지도소의 경영상담 결과,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사업별, 농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신청 한도내에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 시장, 군수는 시·군 농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를 세부사업별,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 도는 시·군별 예산을 종합조정하고, 농발계획 중 년차별 투융자 한도내에서 사업별·대상별지역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에 제출, 예산신청

5. 事業計劃의 評價

o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 (제34조 ~ 제40조 및 제44조~제4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한 후 종합 평가를 실시

- 평가 우수사업은 다음년도 예산, 기금 등을 우선지원하는 반면, 부진사업은 다음년도 지원대상 제외 또는 감액 조치

6. 事業別 妥當性 事前評價

o 통합지침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들의 사전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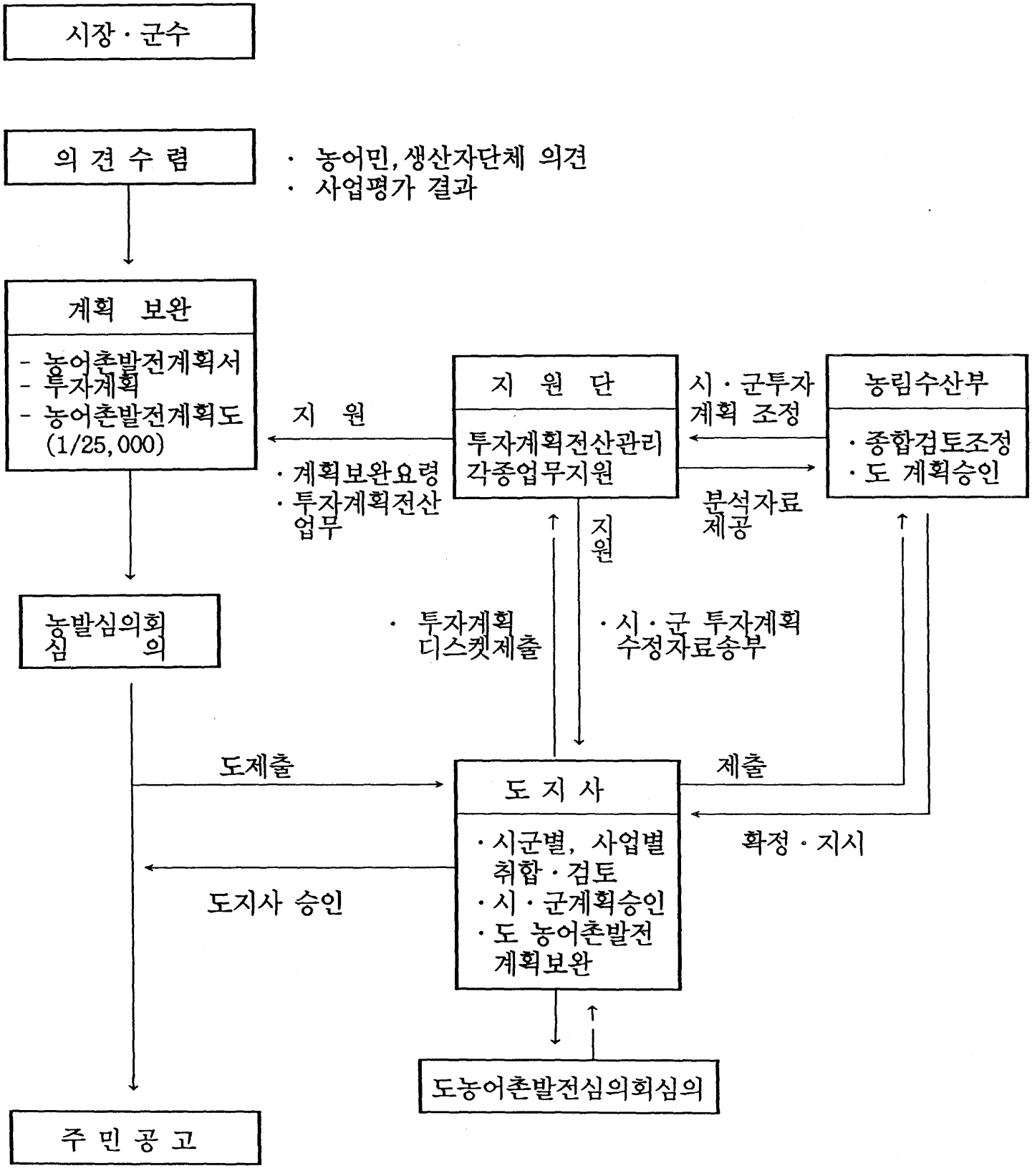
※ 통합실시요령 제7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타당성·경제성분석등 사전조사, 평가실시

o 시·군 농어촌지도소의 종합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군 농발심의회에서 심의케 할 것.

7. 旣存 指針과의 關係

o 이 지침에서 별도로 다르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조정 지침(구조 51110 - 598, '93.11. 3)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기본방침(구조 27101-105, '92. 2.25) 및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구조 27101-179, ,92. 4. 1)을 참조 활용

農漁村發展計劃 修正·補完節次



推 進 日 程

○ '94.12.20까지　농특세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보완지침 시달

○ '94.12.21까지　도 농발계획 담당과장(계장) 및 실무자

※ 12.31까지 도 주관 시·군단위 교육 실시

○ '95. 1.15까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내용을 공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 '95. 2. 5까지　농어민과 생산자조직의 사업신청 및 의견수렴

○ '95. 2.28까지　시·군 농발계획 보완 완료, 도에 제출

○ '95. 3.31까지　도 농어촌발전계획 작성, 농림수산부 제출
- '96실행 계획에 따른 '96예산신청

○ '95. 5.30까지　중앙 각부처별 검토·조정

○ '95. 6.30까지　'97~'98 시·군계획 수립, 도에 제출

○ '95. 7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주민 공고

농어촌 투융자 도별 배정한도

(단위: 억원)

	'96	'97	'98	합 계	도별비율
계	60,273	62,949	63,777	186,999	100.0 %
경 기	7,362	7,670	7,598	22,630	12.1
강 원	4,261	4,529	4,467	13,257	7.1
충 북	3,853	3,970	4,025	11,848	6.3
충 남	7,810	8,312	8,406	24,528	13.1
전 북	7,955	8,206	8,356	24,517	13.1
전 남	10,092	10,452	10,778	31,322	16.8
경 북	10,015	10,304	10,485	30,804	16.5
경 남	7,660	8,223	8,435	24,318	13.0
제 주	1,260	1,280	1,228	3,768	2.0

주1) 투융자배정한도 대상사업 : 42조사업과 농특세사업중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즉, 자율사업과 공공계획사업중 지역 자체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함

2) 도별배정 비율 : 42조 사업은 시·군 농발계획 조정지침시달시 도별 투융자 한도비율을 적용하고, 농특세 사업은 사업별 연도별-도별 계획을 적용

농어촌 투융자 사업분야별 배정한도

(단위 : 억원)

	'96	'97	'98	합 계	도별비율
계	60,273	62,949	63,777	186,999	100.0
정예인력육성	4,125	4,170	4,229	12,524	6.7
농업생산기반	16,016	17,253	17,724	50,993	27.3
경영규모확대	4,017	4,664	4,003	12,684	6.8
농업기계화	4,603	5,005	5,903	15,511	8.3
시설현대화	10,584	11,441	11,465	33,490	17.9
유통·가공·수출	7,450	5,457	4,285	17,192	9.2
소득원,환경개선	7,344	8,425	9,147	24,916	13.3
임업·산촌지원	3,483	3,567	3,671	10,721	5.7
어업·어촌지원	2,651	2,967	3,350	8,968	4.8